

인천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56845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568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2209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담당변호사 강수민, 송하은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성

변론종결 2024. 2. 28.

판결선고 2024. 3. 27.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22094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45,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1.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7. 11. 3.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3. 2. 6.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3. 2.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재판결과를 모두 알고 있으며 재단에 행사한 사해행위에 대하여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소의 판결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 제기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에게 다수의 채권자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말한 ‘재판결과’라는 것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1. 5.경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액을 10,000,000원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E단체1)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7. 신용보증금액을 9,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22. I 주식회사 인천웅진군지부(이하 ‘I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7. 4. 10. I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채무원리금 8,849,7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3. 15. I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 잔액이 8,758,742원이라는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I은행, 채권액에 이 사건 대출금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7. 10. 23.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17하단100094 파산선고, 2017하면100094 면책),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와 같이 I은행만 포함되어 있을 뿐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시켰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대위변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원고를 누락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면책대상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제566조 본문에 따라,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 본문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본문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 형식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파산신청 당시에는 원고가 아직 대위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I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I은행 및 이 사건 대출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파산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 하여 I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소멸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통지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I은행 및 이 사건 대출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다만 파산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시켰다고 볼 수 있다. 갑 제6호증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가 관련 파산면책 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앞서 본 면책결정으로 인해 그 책임을 면하고, 그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되, 소송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성혜, 판사 서희경, 판사 윤정인

1) 이후 'I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